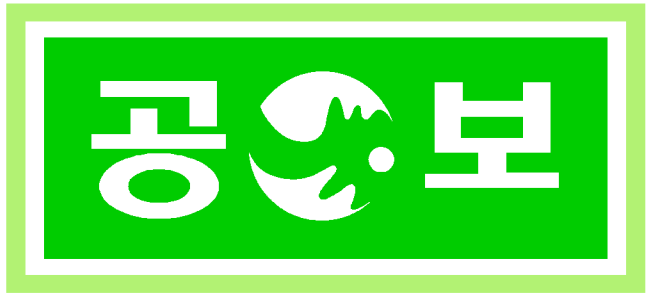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103 호 2018. 1. 18. (목)**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98호[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8-98호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18.1.18.~2018.2.01.(15일)
3. 위반업소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일반음식점 (2013-0254154)	회도령 조개아씨	울산 북구 매곡본길 23, (매곡동, A동, 지상1층)	송*진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6.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41-7783)
7. 유의사항

- 가.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